

의안 번호	2501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1.(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11.(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9.(화)

## 2. 제안이유

- 정액제로 운영되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정액지급에서 예산 범위 내 지급토록 변경 (안 제14조)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16조(시행규칙) 삭제
- 별지 서식 관련 조문 정비
  - 제1호, 제2호, 제4호~제6호 서식 하단 ‘조례 제10조→제11조’ 변경

## 4.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5항

## 5. 검토 사항

### (1) 개정배경

- 정액제로 운영되던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내용검토

#### 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안 제14호제1항) 정비

- (현행) 1일(4시간 기준 근무)당 4만원/ 야간, 새별, 휴일 최대 6만원
- (개정) 예산의 범위 내 활동수당 지급

#### 나. 시행규칙 (제 16조): 불필요한 조문 삭제

#### 다. 별지 서식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

- 제1호(금연지도원 신청서), 제2호(금연지도원 추천서), 제4호(위촉장), 제5호(금연지도원증), 제6호(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하단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 → ‘제11조’ 로 변경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 6.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액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현행 조례에 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 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